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-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0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‘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’와 ‘건강생활실천협의회’의 통·폐합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 통합에 따른 ‘건강생활실천협의회’ 목적 추가 (안 제1조)
- 나. 위원회 통합에 따른 ‘건강생활실천협의회’ 기능 추가 (안 제2조)
- 다. 위원회 구성 추가 (안 제3조)
- 라. 위원회 통합에 따른 간사 변경 (안 제7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(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)
- 2)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3조(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
- 3)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(건강생활실천협의회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1. 11. 11. ~ 12. 1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- 4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5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6)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2.01.04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 및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3조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조례는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 및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”으로, 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”를 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”로 한다.
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 서울특별시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.

1. 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법 제6조에 따른 국민건강생활의 실천·지원에 관한 사항
3. 법 제18조에 따른 국민의 구강질환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 중”을 “사람 중”으로, “자료”를 “사람으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7조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, “보건행정과장”을 “심의 안전 주관부서의 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」는 폐지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<u>조례</u>는 「<u>지역보건법</u>」 제6조 및 「<u>지역보건법시행령</u>」 제3조의 <u>규정에 따라</u> ----- <u>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기타</u>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<신설></p>	<p>제1조(목적) -- <u>조례</u>는 「<u>지역보건법</u>」 제6조 및 「<u>지역보건법시행령</u>」 제3조에 따른 ----- ----- <u>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</u>와 「<u>국민건강증진법</u>」 제10조에 따른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</u>----- -----.</p> <p>제2조(기능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</u> 서울특별시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<u>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</u>(이하 “<u>협의회</u>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<u>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.</u></p> <p>1. 「<u>국민건강증진법</u>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</p>

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
2. 법 제6조에 따른 국민건강생활의 실천·지원에 관한 사항

3. 법 제18조에 따른 국민의 구강질환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제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.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-----

----- 사람 중-----
----- 사람으로 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7조(간사) -----

1명----- 심의 안전 주관부서의 장-----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·폐합하여 운영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안의 시행에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음

4. 작성자: 보건소 보건행정과 신수연 (☎ 3153-9023)